

에 대한 罰則規定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일부 公法學者와 内務部 등 行政府의一般的인 見解입니다.

本 專門委員의 見解로는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節次를 地方自治法에 明示하거나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을 制定하여 立法의로 解決하는게 바람직하다고 思料되며, 다행히 地方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案이 1992年 9月 26日字로 民主黨所屬 朴相千議員外 95人의 發議로 國會에 提出되어 있으나 地方自治團體長 選舉時期를 놓고 與野가 意見이 相反되어 協商이 안 된 관계로 同 法律案의 審查가 進行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繫留 中인 狀態이고, 더구나 地方自治法 第20條를 根據로 한 罰則 條項의 規定은 수긍이 가나, 宣誓義務 條項과 證人出席義務와 證人 등에 대한 同行命令 條項 등은 憲法 第12條와 第37條第2項 및 地方自治法 第15條의 解釋上 問題의 素地는 있다고 思料됩니다.

단, 現實의로는 國會가 立法하는 것이 問題의 素地를 줄일 수 있는 方案일 것이나 自治權의 擴大 強化라는 측면에서 憲法 第117條의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第12條第1項의 罪刑法定主義 등과 관련하여 地方自治法 第15條 但書條項 및 第20條의 解釋을 놓고 서로가 違憲의 素地가 있다는相反된 主張이 있는 터이고, 오늘날 地方自治團體는 단순한 給付行政 등의 주체임에 그치지 않고 權力行政에 있어서도 중요한 機能을 擔當하는 公行政 主體로써 그地位를 변화시키고 있어 條例는 法律과並行하는 중요한 法源이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강력히 提起되고 있는 터인 바, 아직 改正되지 않은 地方自治法 第20條를 根據로 하여 條例制定을 하고 大法院 또는 憲法裁判所의 有權解釋의 機會와 學界의 同參을 유도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만하다고 思料됩니다.

마지막으로 制定 條例案 中 條文上의 檢討餘地가 있는 部分을 要約해서 말씀드리면, 法的인 問題의 素地를 줄이기 위해 不出席,

偽證 등의 罪에 대해 行政刑罰 대신 行政秩序罰을 과하는 方法을 택할 수 있다고 보며同行命令, 訊問 등 일부 거부감이 있는 用語는 순화가 필요하고, 公務上 비밀에 관한 證言, 書類의 提出義務의 경우 行政情報公開 問題와 結付시켜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보며, 證言·鑑定 등에 관한 條例案은 1次對象으로 그 適用範圍를 公務員에 限定하는 방향으로의 檢討餘地는 있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意見 있으시면 發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려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려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증인출석등의 의무) 의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4 (第61回一運營第2次)

<p>수 있다.</p> <p>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p>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p> <p>제 4 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 5 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이 조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p>	<p>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p> <p>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기타 해당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p> <p>⑤동행명령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p> <p>제 7 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건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별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 8 조(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9 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협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p>
---	--

<p>②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전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의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p>	<p>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혀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④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의 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제15조(고발) 의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p>
<p>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p>	<p>제16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委員長 金寅東 委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異議 있어요」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세요.</p>
<p>제13조(의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p>	<p>○金炯奎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이제까지 運營委員長이나 또 各級 常任委員會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市議會會議規則 第50條에 의하면 議事日程과 開議 日時는 委員長이 그 幹事와 協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잘進行되어 왔어요. 잘 進行되어 왔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 議事日程이 아까 말씀하는 1項, 또 2項의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改正案이 案件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委員長이 任</p>